#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81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 박찬대·노종면·유동수

이훈기 • 허종식 • 모경종

맹성규 · 김교흥 · 임호선

김용만 · 진선미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,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, 무역 규모 세계 7위,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·조선·무역 강국이고,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.

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·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 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,000억원에서 5,000억원 규모로 추산됨. 또한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 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,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 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.

이에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

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, 제4조제9호,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4호), 「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7호),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80호),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5호),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5호), 「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6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지방법원"을 "해사국제상사법원, 지방법원"으로 한다.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: 별표 11

별표 1의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국제상사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	인천광역시
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	부산광역시

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

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[별표 11] <u>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</u>

명칭	소재지	관할구역	
인천해사국제상사법	이키코아기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	
원	인천광역시	대전광역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	
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북특	
부산해사국제상사법		별자치도, 전라남도, 대구광역시,	
원		울산광역시, 경상북도, 경상남도,	
		제주특별자치도	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	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
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	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
개정법률	개정법률
제2조(설치) ① 고등법원, 특허법	제2조(설치) ①
원, <u>지방법원</u> , 가정법원, 행정	해사국제상사법원, 지방법
법원,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	원
지원(支院) 및 가정법원의 지원	
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관할구역) 각급 법원의 관	제4조(관할구역)
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	
따라 정한다. 다만, 지방법원	
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	
·군법원을 둔 경우 「법원조	
직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및	
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	
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	
에서 해당 시·군법원의 관할	
구역을 제외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9.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
	역: 별표 11